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41,261천원으로서, 이중 10건에 2,341,95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85,331천원
○ 5.16~5.18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333,406천원
○ 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방제약품비	21,670천원
○ 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수목 제거비	12,390천원
○ 폭염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지원	230,625천원
○ 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	253,000천원
○ 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도비매칭분)	60,000천원
○ 평창운수(주) 노조과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9,450천원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예산 부족분	168,000천원
○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168,084천원 임.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000천원으로서, 이중 1건에 100,0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전	100,000천원 임.
---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41,26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341,956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 그 중 2,301,476천원이 지출되고 23,6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880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08,690천원으로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전을 위해 100,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 ▶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가뭄장기화에 따른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부족분 168,000천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예측 가능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